

제 276회 임시회



---

# 주요 현안 업무보고

---

2017. 8. 31.

복지본부

## V. 민간위탁 재계약·재위탁(5건)

---

1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---

2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---

3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---

4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---

5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

---

#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## 시설개요

- 시 설 명 :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
-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(방배동)
- 운영법인 :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
- 운영인력 : 9명(기관장 1, 상담원 8)

##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노인복지법 제39조의5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) 제3항
  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(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)
- 필요성
  - 인구 고령화와 어르신 부양부담 등 가족 간의 갈등으로 어르신 학대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대피해 어르신 상담·보호 및 예방활동 등 강화

## 추진경위

-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: '17.08.16.
- 현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적격심의(적격) : '17.08.18.

##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'17.10.1~'22.9.30(5년)
- 위탁사무
  - 상담전화(1577-1389)를 통한 어르신 학대 문제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
  - 학대받는 어르신 발견 시 학대사례 관여하여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치료의뢰 또는 일시보호시설에 입소 의뢰하여 사건 마무리 및 사후관리
- '17년 예산 : 382백만원(국비 182백만원, 시비 200백만원)

## 향후계획

- 민간위탁운영 협약체결 : '17.9월

# 시립흥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## 시설개요

- 위 치 : 서대문구 명지2길 14
- 시설규모 : 연면적 1,124.54㎡(지상 2층)
- 이용현황 : 장애인 54명(근로장애인), 종사자 15명
- 위탁기간 : '13. 11. 16. ~ '17. 11. 15.
- 운영법인 :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

##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,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  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 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(재계약)
- 필요성
  - 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

## 추진경위

-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: '17. 7. 20.
- 현 위탁운영 법인 재계약 적격심의(결과:적격) : '17. 8. 2.

##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'17. 11. 16. ~ '22. 11. 15.(5년)
- 위탁사무
  - 화장지 생산 및 임가공 등 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판매, 직업재활훈련·상담
  - 사회적응훈련, 교육 지원, 여가 및 생활지원 등 장애인 복지향상 사업 등
- '17년 예산 : 5,469백만원(시비 723, 자부담 4,746)

## 향후계획

- 비용·협약서 심사 및 협약 체결 : '17. 9~10월

#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## 시설개요

- 위 치 : 송파구 마천로 226(마천동 28-1)
- 시설규모 : 연면적 1,972 $m^2$ (지하 1층, 지상 4층)
- 이용현황 : 장애인 53명(근로장애인), 종사자 13명
- 위탁기간 : '14. 3. 7. ~ '18. 3. 6.
- 운영법인 :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

##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,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  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 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(재계약)
- 필 요 성
  - 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

## 추진경위

-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: '17. 7. 20.
- 현 위탁운영 법인 재계약 적격심의(결과:적격) : '17. 8. 2.

##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'18. 3. 7. ~ '23. 3. 6.(5년)
- 위탁사무
  - 기부물품 가공 및 판매, 직업재활훈련·상담, 사회적응훈련
  - 교육 지원, 여가 및 생활지원 등 장애인 복지향상 사업 등
- '17년 예산 : 3,302백만원(시비 686, 자부담 2,616)

## 향후계획

- 비용·협약서 심사 및 협약 체결 : '17. 9~10월

#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## 시설개요 개요

- 위 치 :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3층(면적142 $m^2$ )
- 운영인력 : 센터장 포함 10명
- 위탁기간 : '16. 7. 1. ~ '17. 12. 31.
- 운영법인 :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

##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, 제34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), 제41조(위임·위탁)
  -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및 제12조(재계약)
- 필 요 성
  - 발달장애인은 인지력·의사소통·자기통제 능력 부족으로 평생 동안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로, 발달장애인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있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함

## 추진경위

-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: '17. 6. 6.
- 현 위탁운영 법인 재계약 적격심의(결과:적격) : '17. 7.27.

## 재계약 내용

- 위탁기간 : '18. 1. 1. ~ '20.12.31.(3년)
- 위탁사무 :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
- '17년 예산 : 500백만원(국비 250, 시비 250)

## 향후계획

- 비용 및 협약심사, 협약 체결 : '17. 9월

#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

## 시설개요

- 위 치 :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(대치동)
- 시설규모 : 상담실 및 사무공간 104.04㎡(2층)
- 이용대상 : 일반시민(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관련)
- 위탁기간 : '16.12.17. ~ '19.12.16.
- 운영법인 :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

##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)
  -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(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·운영)
  -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필요성
  -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정하고 장애인 권익보호 전문 법인에 위탁하여 인권침해, 학대 및 차별행위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 수행

## 추진경위

- 「장애인권익옹호기관」 설치·운영 계획 수립 : '17. 6.13.
  - 기존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확대·전환하여 재위탁(공모)

##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'18. 1. 1. ~ '20.12.31.(3년)
- 위탁사무
  -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관리·운영,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·운영
  -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상담, 사례관리, 조사 및 구제사업
  -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, 차별금지 및 학대예방 교육사업
- '17년 예산 : 602백만원(국비 48, 시비 554)

## 향후계획

- 장애인인권센터 재위탁 공개모집 : '17. 9월
- 민간위탁 운영 계약심사 및 협약 : '17.12월